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7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발 의 자 : 김재형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제리, 박상구, 김화숙, 고병국, 임종국, 이승미, 김정태, 봉양순, 최기찬, 김기덕, 이병도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, 공항, 철도객차,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심정지사고 발생 시 생존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.

○ 특히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시설로 규정되지 않음.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원 중에는 83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.

○ 이에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무설치기관 외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근린공원과 그 외 다중집합장소를 권장설치기관으로 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근린공원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	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----------. -----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